



Yale SCHOOL OF MANAGEMENT
Program on Financial Stability

EliScholar – A Digital Platform for Scholarly Publishing at Yale

YPFS Resource Library

12-31-1997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약칭: 금융위원회법)

South Korean Government

<https://elischolar.library.yale.edu/ypfs-documents2/1852>

This resource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Yale Program on Financial Stability and [EliScholar](#), a digital platform for scholarly publishing provided by Yale University Library.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ypfs@yale.edu.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 (약칭: 금융위원회법)

[시행 1998. 4. 1.] [법률 제5490호, 1997. 12. 31., 제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3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金融監督委員會와 金融監督院을 設置하여 健全한 信用秩序와 公정한 金融去來慣行을 확립하고 預金者 및 投資者등 金融需要者를 보호함으로써 國民經濟의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공정성의 유지 등) 金融監督委員會와 金融監督院은 그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公正성을 유지하고 透明性を 확보하며 金融機關의 自律性を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2章 金融監督委員會

第1節 金融監督委員會의 設置

第3條 (金融監督委員會의 設置 및 地位) ① 金融監督業務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에 金融監督委員會를 둔다.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를 獨立的으로 수행한다.

第4條 (金融監督委員會의 구성) ① 金融監督委員會는 9人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副委員長 각 1人과 다음 各號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1. 財政經濟院 次官
2. 韓國銀行 副總裁
3. 預金保險公社 社長
4. 財政經濟院 長官이 추천하는 會計專門家 1人
5. 金融監督委員會 委員長이 추천하는 金融專門家 1人
6. 法務部長官이 추천하는 法律專門家 1人
7. 大韓商工會議所 會長이 추천하는 經濟界代表 1人

② 金融監督委員會 委員長(이하 이 章 第1節 및 第2節에서 "委員長" 이라 한다)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하며, 金融監督委員會 副委員長(이하 이 章 第1節 및 第2節에서 "副委員長"이라 한다)은 財政經濟院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 第1項第4號 내지 第7號의 委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推薦機關의 추천을 받아 大統領이 任命한다.

④ 委員長 및 副委員長은 政務職 國家公務員으로, 第1項第5號의 委員은 1級相當 別定職 國家公務員으로 각각 補하며, 第1項第4號・第6號 및 第7號의 委員은 非常任으로 한다.

⑤ 委員長・副委員長 및 第1項第5號의 委員은 政府組織法 第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政府委員이 된다.

第5條 (委員長) ① 委員長은 金融監督委員會를 代表하며, 金融監督委員會의 會議를 主宰하고 事務를 統轄한다.

② 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副委員長, 第4條第1項第5號의 委員의 順位로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하며 副委員長, 第4條第1項第5號의 委員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가 미리 정한 委員이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第6條 (委員의 任期등) ① 委員長・副委員長 및 第4條第1項第4號 내지 第7號의 委員(이하 "任命職 委員"이라 한다)의 任期는 3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② 任命職 委員에 闕員이 있는 때에는 새로 任命하되, 새로 任命된 委員의 任期는 任命된 날부터 起算한다.

第7條 (政治活動의 금지) 任命職 委員은 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政黨에 加入할 수 없으며 政治運動에 參與할 수 없다.

第8條 (委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任命職 委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禁錮 이상의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禁錮 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이 法 기타 金融關係法令(外國의 金融關係法令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罰金刑의 宣告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7. 이 法 기타 金融關係法令(外國의 金融關係法令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解任되거나 免職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第9條 (兼職등의 금지) 委員長・副委員長 및 第4條第1項第5號의 委員은 在職중 다음 各號의 職을 겸하거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사업을 營위할 수 없다.

1. 國會議員 또는 地方議會議員의 職
2. 國家公務員 또는 地方公務員의 職
3. 이 法과 다른 法令에 의하여 監督의 대상이 되는 團體의 任・職員의 職. 다만, 委員長이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兼任하는 金融監督院 院長의 職을 제외한다.
4. 기타 報酬를 받는 職

第10條 (委員의 身分保障 등) ①任命職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任期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解任되지 아니한다.

1. 第8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心身の 障礙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法에 의한 職務上의 義務를 위반하여 金融監督委員會 委員으로서의 職務遂行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 ②委員이 第1項의 사유로 解任되는 경우 解任되기 전에 委員으로서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第2節 金融監督委員會의 운영

第11條 (會議) ①金融監督委員會의 會議는 3인 이상의 委員의 요구가 있는 때에 委員長이 召集한다. 다만, 委員長은 單獨으로 會議를 召集할 수 있다.

②金融監督委員會의 會議는 그 議決方法에 관하여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金融監督委員會 委員은 3인 이상의 贊成으로 議案을 提議할 수 있다. 다만, 委員長은 單獨으로 議案을 提議할 수 있다.

④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審議・議決에서 除斥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利害關係가 있는 사항
2. 配偶者, 4寸 이내의 血族, 2寸 이내의 姻戚의 관계에 있는 者 또는 자기가 속한 法人과 利害關係가 있는 사항

第12條 (議決書 작성등) 金融監督委員會가 議決하는 경우에는 議決書를 작성하여야 하며, 議決에 참여한 委員은 그 議決書에 記名하고 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第13條 (意見聽取) 金融監督委員會는 審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監督院 副院長・副院長補 및 기타 關係專門家等으로부터 의견을 聽取할 수 있다.

第14條 (緊急措置) ①委員長은 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金融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金融監督에 관한 緊急措置가 필요한 경우로서 金融監督委員會를 召集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權限範圍안에서 필요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

②委員長은 第1項의 措置를 취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金融監督委員會의 會議를 召集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金融監督委員會는 第1項의 措置를 확인・修正 또는 停止할 수 있다.

第15條 (組織・規則) ①이 法에 規定된 것 외에 金融監督委員會의 組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金融監督委員會의 規則으로 정한다.

②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豫算・會計 및 議事管理機能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公務員을 둘 수 있다.

③金融監督委員會 委員長은 金融監督委員會 및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證券先物委員會의 豫算 기타 行政事務를 總括한다.

第16條 (운영등) 이 法과 다른 法令에 規定된 것 외에 金融監督委員會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金融監督委員會의 規則으로 정한다.

第3節 金融監督委員會의 所管事務

第17條 (金融監督) 金融監督委員會는 이 法과 다른 法令이 規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 金融機關에 대한 監督과 관련된 規程의 制定 및 改正
2. 金融機關의 經營과 관련된 認・許可
3. 金融機關에 대한 檢査・制裁와 관련된 주요사항
4. 證券・先物市場의 관리・監督 및 監視등과 관련된 주요사항
5. 기타 다른 法令에서 金融監督委員會에 부여된 業務에 관한 사항

第18條 (金融監督院에 대한 指示・監督) 金融監督委員會는 이 法과 다른 法令이 規定하는 바에 따라 金融監督院의 業務・운영・관리에 대한 指示・監督을 하며,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 金融監督院의 定款變更에 대한 승인
2. 金融監督院의 組織 및 機構에 관한 사항
3. 金融監督院의 豫算 및 決算 승인
4. 金融監督院 職員의 報酬基準 決定
5. 기타 金融監督院을 指示・監督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第4節 證券先物委員會

第19條 (證券先物委員會의 設置) 이 法과 다른 法令이 規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證券先物委員會를 둔다.

1. 證券・先物市場의 不公正去來 調査
2. 企業會計의 기준 및 會計監理에 관한 業務
3. 金融監督委員會가 審議・議決하는 證券・先物市場의 관리・監督 및 監視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事前審議
4. 證券・先物市場의 관리・監督 및 監視등을 위하여 金融監督委員會로부터 위임받은 業務

5. 기타 다른 法令에서 證券先物委員會에 부여된 業務

第20條 (證券先物委員會의 구성등) ①證券先物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5人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委員長을 제외한 委員중 1人은 常任으로 한다.

②證券先物委員會 委員長은 金融監督委員會 副委員長이 겸임하며, 證券先物委員會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金融監督委員會 委員長의 추천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1. 金融・證券・先物 또는 會計分野에 관한 經驗이 있는 2級 이상의 公務員의 職에 있었던 者
2. 大學에서 法律學・經濟學・經營學 또는 會計學을 專攻한 者로서 大學이나 공인된 研究機關에서 副教授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職에 15年 이상 있었던 者
3. 기타 金融・證券・先物 또는 會計分野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③證券先物委員會의 委員長이 아닌 常任委員은 1級相當 別定職 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④證券先物委員會 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常任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하며, 委員長・常任委員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證券先物委員會가 미리 정한 委員이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⑤委員長이 아닌 證券先物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⑥第6條第2項 및 第7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은 證券先物委員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1條 (會議등) ①證券先物委員會의 會議는 2人 이상의 證券先物委員會 委員의 요구가 있는 때에 證券先物委員會 委員長이 召集한다. 다만, 證券先物委員會 委員長은 單獨으로 會議를 召集할 수 있다.

②證券先物委員會의 會議는 3人 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第11條第4項・第12條 및 第13條의 規定은 證券先物委員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2條 (組織・規則등) ①이 法에 規定된 것 외에 證券先物委員會의 組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金融監督委員會의 規則으로 정한다.

②이 法과 다른 法令에 規定된 것 외에 證券先物委員會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規則으로 정한다.

③第2項의 規則을 制定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23條 (金融監督院에 대한 指示・監督) 證券先物委員會는 第19條 各號의 業務에 관하여 金融監督院을 指示・監督한다.

第3章 金融監督院

第1節 通則

第24條 (金融監督院의 設立) ①金融監督委員會 또는 證券先物委員會의 指示를 받아 金融機關에 대한 檢査・監督業務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金融監督院을 設立한다.

②金融監督院은 無資本特殊法人으로 한다.

第25條 (事務所) ①金融監督院의 주된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②金融監督院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支院 또는 出張所를 둘 수 있다.

第26條 (定款) ①金融監督院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다.

1. 目的
2. 명칭
3. 事務所에 관한 사항

4. 職員에 관한 사항
5. 業務와 그 執行에 관한 사항
6. 豫算 및 會計에 관한 사항
7. 公告의 방법
8.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 金融監督院은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27條 (登記) ① 金融監督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한다.

② 金融監督院은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登記후가 아니면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28條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金融監督院이 아닌 者는 金融監督院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2節 院長・副院長・副院長補 및 監事와 職員

第29條 (執行幹部等) ① 金融監督院에 院長 1人, 副院長 4人 이내, 副院長補 9人 이내와 監事 1人을 둔다.

② 金融監督委員會 委員長은 金融監督院의 院長(이하 "院長"이라 한다)을 검임한다.

③ 金融監督院의 副院長과 副院長補(이하 "副院長・副院長補"라 한다)는 院長의 提請으로 金融監督委員會가 任命한다.

④ 監事は 金融監督委員會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⑤ 副院長・副院長補 및 監事の 任期는 3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⑥ 副院長・副院長補와 監事に 關員이 있는 때에는 새로 任命하되, 그 任期는 任命된 날부터 起算한다.

第30條 (職務) ① 院長은 金融監督院을 代表하며, 그 業務를 統轄한다.

② 院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 委員長の 職務를 代行하는 金融監督委員會 委員이 院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③ 副院長은 院長을 보좌하고 金融監督院의 業務를 分掌하며, 副院長補는 院長과 副院長을 보좌하고 金融監督院의 業務를 分掌한다.

④ 監事は 金融監督院의 業務와 會計를 監査한다.

第31條 (代表權의 제한) 院長의 이익과 金融監督院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金融監督委員會 委員長の 職務를 代行하는 金融監督委員會 委員이 金融監督院을 代表한다.

第32條 (副院長등의 解任) 副院長・副院長補 및 監事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29條第3項 및 第4項에 의한 提請權者의 提請으로 任命權者가 解任한다.

1. 破産宣告를 받은 경우
2. 禁錮 이상의 刑 또는 이 法 기타 金融關係法令(外國의 金融關係法令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罰金 이상의 刑을 宣告받은 경우
3. 心身の 障礙로 인하여 職務의 執行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定款을 위반한 경우

第33條 (職員의 任免) 職員은 院長이 任免한다.

第34條 (兼職의 제한) 副院長・副院長補 및 監事와 職員은 그 職務외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지 못하며, 당해 任命權者의 승인없이 다른 職務를 겸하지 못한다.

第35條 (清廉 및 秘密維持義務) ①院長・副院長・副院長補 및 監事와 職員은 이 法の 規定에 의하여 檢査・監督을 받는 金融機關 또는 그 機關의 任・職員에게 貸出을 强要하거나 金品 기타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院長・副院長・副院長補 및 監事와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は 그 職務上 알게 된 情報을 他人에게 누설하거나 職務上 目的外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6條 (代理人의 選任) ①院長은 副院長・副院長補 또는 職員중에서 金融監督院의 業務에 관하여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행위를 할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裁判上 代理人으로 選任될 수 있는 職員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節 業務

第37條 (業務) 金融監督院은 이 法과 다른 法令이 規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

1. 第38條 各號의 機關의 業務 및 財産狀況에 대한 檢査
2. 第1號의 檢査結果에 따른 이 法과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한 制裁
3. 第2章의 規定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 및 證券先物委員會의 業務補佐
4. 기타 이 法과 다른 法令에서 金融監督院이 수행하도록 하는 業務

第38條 (檢査對象機關) 金融監督院의 檢査를 받는 機關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銀行法 또는 長期信用銀行法에 의한 認可를 받아 設立된 金融機關
2. 證券去來法에 의한 證券會社・證券金融會社・投資諮問會社 및 名義改書代行業務를 수행하는 機關
3. 證券投資信託業法에 의한 委託會社
4.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
5. 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에 의한 綜合金融會社
6. 相互信用金庫法에 의한 相互信用金庫와 그 聯合會
7. 信用協同組合法에 의한 信用協同組合 및 그 中央會
8. 信託業法에 의한 信託會社
9. 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 與信專門金融會社 및 兼營與信業者
10. 先物去來法에 의한 先物業者
11.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의 信用事業部門
12. 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및 그 會員인 水産業協同組合의 信用事業部門
13. 畜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한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 信用事業部門
14. 다른 法令에서 金融監督院이 檢査를 하도록 規定한 機關
15. 기타 金融業 및 金融關聯業務를 영위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第39條 (規則의 制定) ①院長은 金融監督院의 業務遂行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則을 制定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40條 (資料의 제출요구등) ①院長은 第38條 各號의 機關 또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監督院에 檢査가 委託된 對象機關에 대하여 業務遂行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機關에 대하여 業務 또는 財産에 관한 보고, 資料의 제출, 關係者の 출석 및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②第37條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者は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41條 (是正命令 및 懲戒要求) ①院長은 第38條 各號에 해당하는 機關의 任・職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機關의 長에게 이를 是正하게 하거나 당해 職員의 懲戒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規程・命令 또는 指示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의하여 院長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資料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3. 이 법에 의한 金融監督院의 監督과 檢査業務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院長의 是正命令이나 懲戒要求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懲戒는 免職・停職・減俸・譴責 및 警告로 구분한다.

第42條 (任員의 解任勸告등) 院長은 第38條 各號에 해당하는 機關의 任員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規程・命令 또는 指示를 故意로 위반한 때에는 당해 任員의 解任을 任免權者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당해 任員의 業務執行의 정지를 명할 것을 金融監督委員會에 建議할 수 있다.

第43條 (營業停止등) 院長은 第38條 各號의 機關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規程・命令 또는 指示를 계속 위반하여 違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營業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에 다음 各號의 1을 명할 것을 建議할 수 있다.

1. 당해 機關의 違法行爲 또는 非行의 중지
2. 6月の 범위내에서의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第4節 會計

第44條 (會計) 金融監督院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第45條 (豫算과 決算) ①金融監督院의 豫算은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金融監督院은 會計年度 開始 60日전까지 金融監督委員會에 豫算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院長은 會計年度 종료후 2月 이내에 당해年度の 決算書를 金融監督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46條 (財源) 金融監督院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그 經費를 충당한다.

1. 政府의 出捐金
2. 韓國銀行의 出捐金
3. 第38條 各號에 해당하는 機關의 出捐金
4.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
5. 기타 다른 法令이나 定款에서 정한 收入

第47條 (分擔金) ①金融監督院의 檢査를 받는 第38條 各號의 機關은 分擔金を 金融監督院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の 分擔料率・한도 기타 分擔金の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8條 (借入) 金融監督院은 필요한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어 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第49條 (國有財産의 無償貸付등) 政府는 金融監督院에 대하여 國有財産을 無償으로 貸付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第50條 (剩餘金の 처리) 金融監督院의 決算上 剩餘金은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어 다음 會計年度에 移越할 수 있다.

第5節 金融紛爭의 調停

第51條 (紛爭調停機構) 第38條 各號의 機關과 預金者등 金融需要者 기타 利害關係人 사이에 발생하는 金融關聯紛爭의 調停에 관한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金融監督院에 金融紛爭調停委員會(이하 "調停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第52條 (調停委員會의 구성) ①調停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3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調停委員會委員長은 院長이 그 소속 副院長중에서 지명하는 者가 되며, 調停委員會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로 한다.

1. 院長이 그 소속 副院長補중에서 지명하는 者
2.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중에서 院長이 위촉하는 者
3. 消費者保護法에 의한 韓國消費者保護院 및 消費者團體의 任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로서 院長이 위촉하는 者
4. 金融機關 또는 金融關係機關・團體에서 15年 이상 근무한 經歷이 있는 者로서 院長이 위촉하는 者
5. 金融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院長이 위촉하는 者
6. 專門醫의 資格이 있는 醫師중에서 院長이 위촉하는 者
7. 기타 紛爭의 調停과 관련하여 院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者

③第2項第2號 내지 第7號의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④調停委員會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院長이 지명하는 調停委員會委員이 調停委員會委員長の 職務를 代行한다.

第53條 (紛爭의 調停) ①第38條 各號의 機關, 預金者등 金融需要者 및 기타 利害關係人은 金融과 관련하여 紛爭이 있는 때에는 院長에게 紛爭의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②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調停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關係當事者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合議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紛爭調停의 申請內容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合議勸告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委員會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法院에 提訴된 事件이거나 紛爭調停의 申請이 있는 후 訴를 제기한 경우
2. 申請의 內容이 紛爭調停對象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申請의 內容이 關聯法令 또는 객관적인 證憑등에 의하여 合議勸告節次 및 調停節次進行의 實益이 없는 경우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③院長은 紛爭調停의 申請을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合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調停委員會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調停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日 이내에 이를 審議하여 調停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院長은 調停委員會가 調停案을 작성한 때에는 申請人과 關係當事者에게 이를 제시하고 受諾을 권고할 수 있다.

第54條 (調停委員會의 會議) ①調停委員會의 會議는 調停委員會委員長 1人을 포함하여 調停委員會委員長이 매 會議마다 지명하는 7人 이상 11人 이하의 調停委員會委員으로 구성하며, 調停委員會委員長이 召集한다.

②調停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構成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院長은 調停委員會의 議決事項이 違法하거나 公益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議要求가 있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構成員 3分の 2 이상의 출석과 出席委員 3分の 2 이상의 贊成으로 再議決한다.

第55條 (調停의 효력) 當事者가 第53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案을 受諾한 경우 당해 調停案은 裁判上の 和解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第56條 (調停의 중지) 院長은 調停申請事件의 處理節次の 진행 중에 一方當事者가 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調停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當事者 쌍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57條 (調停委員會의 운영등) 調停委員會의 운영 및 紛爭調停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章 金融監督機構 상호간 및 다른 機關과의 관계

第1節 金融監督委員會와 金融監督院과의 관계

第58條 (資料의 제출) 院長은 金融監督委員會 또는 證券先物委員會가 요구하는 金融監督등에 필요한 資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第59條 (檢査의 결과 및 措置事項의 보고) 院長은 第37條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金融監督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41條 및 第42條의 措置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60條 (報告・檢査등) 金融監督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院의 業務・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業務・財産狀況・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할 수 있다.

第61條 (金融監督委員會등의 命令權등) ① 金融監督委員會 또는 證券先物委員會는 金融監督院의 業務를 指示・監督하는데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② 金融監督委員會는 證券先物委員會 또는 金融監督院의 처분이 違法하거나 公益 또는 預金者등 金融需要者の 보호를 위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하거나 그 執行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證券先物委員會는 第19條 各號의 業務에 관한 金融監督院의 처분이 違法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하거나 그 執行을 정지시킬 수 있다.

第2節 金融監督委員會와 韓國銀行과의 관계

第62條 (檢査 및 共同檢査 요구등) ① 韓國銀行은 金融通貨委員會가 通貨信用政策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金融監督院에 대하여 韓國銀行法 第11條의 金融機關에 대한 檢査를 요구하거나 韓國銀行 所屬職員이 金融監督院의 金融機關 檢査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韓國銀行은 金融監督院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檢査結果에 대하여 필요한 是正措置를 요구할 수 있다.

③ 韓國銀行이 第1項에 의한 檢査 및 共同檢査를 요구하는 때에는 檢査目的・對象機關・檢査範圍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金融監督院은 韓國銀行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를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63條 (再議要求權) ① 金融通貨委員會는 金融監督委員會가 通貨信用政策과 직접 관련되는 措置를 하는 경우 異議가 있는 때에는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再議要求가 있는 경우 金融監督委員會가 在籍委員 3分の 2 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한 때에는 第1項의 措置는 확정된다.

第3節 金融監督委員會와 財政經濟院등과의 관계

第64條 (認可등의 取消要請) 金融監督委員會는 第38條 各號의 機關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規程・命令 또는 指示를 故意로 계속 위반하여 違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營業함으로써 金融秩序를 문란하게 한 경우 財政經濟院長官이 認可등을 한 機關에 대하여는 財政經濟院長官에게 認可등을 取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第65條 (資料協助) 財政經濟院長官과 金融通貨委員會 및 金融監督委員會는 政策遂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간에 資料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第66條 (預金保險公社의 檢査要請) ①預金保險公社 社長은 業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金融監督委員會 또는 金融監督院에 대하여 預金者保護法 第2條第1號의 附保金融機關에 대한 檢査를 요청하거나, 預金保險公社 所屬職員이 檢査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預金保險公社 社長이 第1項의 檢査를 요청하는 때에는 檢査目的・對象機關・檢査範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金融監督院은 預金保險公社 社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67條 (院長의 協助要請) 院長은 職務遂行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行政機關 기타 關係機關에 대하여 協助를 요청할 수 있다.

第5章 補則

第68條 (罰則) ①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2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69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①金融監督委員會 委員 또는 證券先物委員會 委員으로서 公務員이 아닌 者와 金融監督院의 執行幹部 및 職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으로 보는 職員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0條 (行政審判) 金融監督委員會・證券先物委員會 및 金融監督院이 행한 違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權利・이익의 침해를 받은 者는 國務總理에게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다.

부칙 <제5490호, 1997. 12. 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1일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3條第4項 내지 第9項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이 法에 별도의 規定이 없는 한 第3章 第1節・第2節・第4節 및 第5節의 規定은 1999年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金融監督院의 權限과 業務에 관한 經過措置) ①第37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監督院의 業務는 金融監督院이 設立될 때까지 附則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銀行監督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證券去來法에 의한 證券監督院・保險業法에 의한 保險監督院 및 信用管理 基金法에 의한 信用管理基金(이하 "銀行監督院등"이라 한다)이 각각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서 金融監督院 및 金融監督院長은 金融監督院이 設立될 때까지 각각 종전의 法律에 의한 銀行監督院등이나 銀行監督院長・證券監督院長・保險監督院長 또는 信用管理基金理事長(이하 "銀行監督院長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銀行監督院등의 檢査를 받는 機關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銀行監督院의 경우에는 第38條第1號・第8號・第11號 내지 第13號의 機關

2. 證券監督院의 경우에는 第38條第2號・第3號 및 第10號의 機關

3. 保險監督院의 경우에는 第38條第4號의 機關

4. 信用管理基金의 경우에는 第38條第5號 내지 第7號 및 第9號의 機關

③銀行監督院등은 第38條第14號 및 第15號의 機關에 대하여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檢査業務를 각각 수행한다.

④金融監督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銀行監督院등의 檢査對象機關을 調整할 수 있다.

⑤第28條 및 第68條第2項의 規定은 金融監督院이 設立될 때까지 銀行監督院등의 類似名稱使用禁止 및 그 處罰에 관하여 각각 이를 準用한다.

第3條 (銀行監督院의 設立) ①金融監督院이 設立될 때까지 附則 第2條第2項第1號의 機關에 대한 檢査・監督등의 業務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銀行監督院을 設立한다.

②銀行監督院은 無資本特殊法人으로 한다.

③銀行監督院은 종전의 韓國銀行法에 의한 韓國銀行銀行監督院의 院長・副院長・副院長補및 職員의 雇傭關係등 모든 權利・義務를 包括承繼한다.

④財政經濟院長官은 韓國銀行銀行監督院長으로 하여금 이 法 公布日부터 30日 이내에 10人의 設立委員會를 위촉하여 設立委員會를 구성하게 하고, 銀行監督院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게 한다.

⑤設立委員會는 銀行監督院의 定款을 작성하여 財政經濟院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⑥設立委員會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設立委員의 連名으로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⑦設立委員會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를 완료한 때에는 그 事務와 財産을 銀行監督委員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⑧設立委員은 第7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와 財産의 引繼가 끝난 때에 解囑된 것으로 본다.

⑨銀行監督院을 設立하는데 소요되는 費用은 韓國銀行이 부담한다.

⑩第25條 내지 第27條의 規定은 銀行監督院의 定款・登記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4條 (銀行監督院등의 豫算) ①銀行監督院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豫算에 소요되는 經費를 承擔한다.

1. 韓國銀行의 出捐金

2. 附則 第2條第2項第1號의 機關의 出捐金 및 分擔金

②信用管理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豫算에 소요되는 經費를 承擔한다.

1. 預金者保護法에 의한 預金保險公社의 出捐金

2. 附則 第2條第2項第4號의 機關의 出捐金 및 分擔金

③證券監督院 및 保險監督院의 豫算에 소요되는 經費는 종전의 證券去來法・保險業法の 規定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承擔한다.

④韓國銀行・預金保險公社 및 附則 第2條第2項第1號 및 第4號의 機關은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정해진 出捐金を 會計年度 開始日까지 銀行監督院 및 信用管理基金에 出捐하여야 한다.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の 分擔料率・限度 기타 分擔金の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金融監督院이 設立될 때까지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한다.

第5條 (紛爭調停에 관한 經過措置) ①金融監督院이 設立될 때까지 銀行監督院등에 紛爭調停을 申請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銀行法・證券去來法 및 保險業法の 紛爭調停節次에 따른다.

②金融監督院 設立당시에 종전의 銀行法・證券去來法 및 保險業法の 規定에 의하여 銀行監督院등에 紛爭調停을 申請한 것은 이 法에 의하여 調停委員會에 대하여 紛爭調停을 申請한 것으로 본다.

第6條 (雇傭關係등의 承繼) ①金融監督院은 그 設立과 동시에 銀行監督院등의 職員의 雇傭關係등 모든 權利・義務와 財産을 包括承繼한다.

②職員의 處遇 기타 服務關係를 決定함에 있어서는 각 職員의 經歷・能力 및 勤續年數등을 고려하여 衡平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第7條 (金融監督院의 設立) ①金融監督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때에 10人 이내의 設立委員을 위촉하여 設立委員會를 구성하고, 金融監督院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게 한다.

②設立委員會는 金融監督院의 定款을 작성하여 金融監督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連名으로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設立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를 완료한 때에는 그 事務와 財産을 이 法에 의하여 任命된 金融監督院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⑤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와 財産의 引繼가 끝난 때에 解囑된 것으로 본다.

⑥設立費用은 銀行監督院등이 공동으로 부담한다.